

## 집합규약 변경대비표

1. 투자신탁의 명칭:아라 공모주 하이일드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(전문투자자)

2. 집합투자규약 변경 사유:

- 가입자격 전문투자자 한정으로 변경
- 법 개정에 따른 ‘전문투자형’을 일괄 ‘일반’으로 변경
- 법 개정에 따른 개정조항, 신설조항, 삭제조항, 전문투자자 명시조항 반영
- 투자운용성과 최신일(2022.02.28)자로 갱신
- 집합투자업자 주소 및 대표이사 변경

3. 약관변경 시행일: 2022년 04월 15일

4. 약관변경내용

변경 전	변경 후
<p><b>투자신탁의 명칭</b> 아라 공모주 하이일드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</p>	<p><b>투자신탁의 명칭</b> 아라 공모주 하이일드 <b>일반</b> 사모투자신탁제1호 (<b>전문투자자</b>)</p>
<p><b>제2조(용어의 정의)</b> 8. “사모형”이라 함은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투자자의 총수가 49인 이하인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. 10. “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”이라 함은 법 9조 제19항 제2호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.</p>	<p><b>제2조(용어의 정의)</b> 8. “<b>사모집합투자기구</b>”라 함은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투자자의 총수가 <b>100인</b> 이하인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. 10. “<b>일반</b> 사모집합투자기구”라 함은 법 9조 제19항 제2호의 사모집합투자기구 말한다.</p>
<p><b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</b> ① 이 투자신탁은 혼합자산투자신탁으로서, 투자신탁의 명칭은 "아라 공모주 하이일드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"로 한다. ② 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.</p>	<p><b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</b> ① 이 투자신탁은 혼합자산투자신탁으로서, 투자신탁의 명칭은 "<b>아라</b> 공모주 하이일드 <b>일반</b> 사모투자신탁 제1호(<b>전문투자자</b>)"로 한다. ② 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<b>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</b>로 한다.</p>
<p>5. 사모형</p>	<p>5. 사모<b>집합투자기구</b></p>

7.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

제3조의2(투자신탁의 가입제한)

이 투자신탁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가입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자("적격투자자"라 한다)에 한한다.

제3조의3(투자권유 등)

- ①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는 투자자가 "적격투자자" 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② 법 제46조와 제46조의2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적격투자자 중 일반투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③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는 적격투자자에게 법 제46조와 제46조의2의 적용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한다.

제4조의2(전담중개업자)

- 1.~9.<생략>
- 10. 다른 투자자의 투자를 유치하거나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(투자신탁의 경우에는 그 수익증권의 매수를 포함한다)를 하는 업무

제8조(신탁금의 납입)

- ①~③<생략>
-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가능하고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

7.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

제3조의2(투자신탁의 가입제한)

이 투자신탁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가입자격은 법 제249조의2 제1호에 따른 전문투자자(이하 "전문투자자"라 한다)에 한한다.

제3조의3(투자권유 등)

- ① 판매회사는 투자자가 "전문투자자" 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②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와 제18조는 판매회사가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전문투자자 중 일반금융소비자 등 동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③ 판매회사는 전문투자자에게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와 제18조의 적용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한다. 또한 동법 제22조의 단서 조항을 고객에게 설명하여야 한다.

제4조의2(전담중개업자)

- 1.~9.<현행과 동일>
- 10. 다른 투자자의 투자를 유치하거나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(투자신탁의 경우에는 그 수익증권의 매수를 포함한다)를 하는 업무

제8조(신탁금의 납입)

- ①~③<현행과 동일>
-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가능하고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

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249조8 제3항에 따라 금전 외의 자산으로 납입할 수 있다.

#### 제11조(수익증권의 양도)

① ① 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,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. 다만, 수익자는 법 제249조의8 제2항에 따른 적격투자자가 아닌 자에게 그 수익권을 양도하여서는 아니되며, 양도의 결과 사모형의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는 분할하여 양도할 수 있다.

#### 제14조 (투자목적)

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 및 투자비중에 제한이 없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,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등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서 하이일드채권을 비롯한 채권과 공모주를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#### 제17조 (운용 및 투자제한)

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< 생략 >

2.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이 투자신탁의 순자산

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249조8 제4항에 따라 금전 외의 자산으로 납입할 수 있다.

#### 제11조(수익증권의 양도)

① ① 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,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. 다만, 수익자는 법 제249조의2에 따른 전문투자자가 아닌 자에게 그 수익권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며, 양도의 결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요건인 투자자수가 100인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분할하여 양도할 수 있다.

#### 제14조 (투자목적)

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 및 투자비중에 제한이 없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,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등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서 하이일드채권을 비롯한 채권과 공모주를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#### 제17조 (운용 및 투자제한)

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< 현행과 동일 >

2. 다음 가·나·라·마 목을 합산한 금액 또는 다 목의 금액이 이

총액의 200%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

가.나.다.<생략>

<신설>

제21조의2(수익증권의 판매제한 등)

①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49인 이하이어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<신설>

③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사모의 방법으로 적격투자자에게만 판매한다

제25조(환매연기)

① <생략>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사항을 판매회사를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- 1. 환매를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 환매대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

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

가.나.다. <현행과 동일>

라. 증권을 환매조건부매도(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 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한다. 이하 같다.)하는 경우 그 매도 금액

마. 증권을 차입하여 매도하는 경우 그 매도 금액

제21조의2(수익증권의 판매제한 등)

①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100인 이하이어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집합투자기구를 운영하는 집합투자업자가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함께 운영하는 경우로서 해당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발행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 발행총수의 100분의 10미만을 취득한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의 수도 더하여야 한다.

④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사모의 방법으로 전문투자자에게만 판매한다

제25조(환매연기)

① <현행과 동일>

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판매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.

- 1.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연기한 경우
- 2.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

③ 집합투자업자는 제2항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는 해당 판매회사

<p>2. 환매연기를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환매연기기간 및 환매를 재개할 때의 환매대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</p> <p>3. 일부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환매연기의 원인이 되는 자산의 처리방법</p> <p>③집합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라 환매를 계속 연기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사항을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</li> <li>2. 환매를 연기하는 시간</li> <li>3.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대금의 지급방법</li> <li>4. 기타 법 시행령 제257조 제3항에서 정한 사항</li> </ol> <p>④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된 경우에는 환매가 연기된 수익자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법 시행령 제25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</p> <p>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제1항에 따른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(이하“정상자산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다.</p> <p>집합투자업자는 제5항에 따라 환매가 연기된 투자신탁재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있다.</p> <p>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</p>	<p>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.</p> <p>④ 판매회사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판매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.</p> <p>&lt; 삭 제 &gt;</p>
---	---

있다.

1.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상법 제354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(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)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
2.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

#### 제26조(투자신탁재산 평가)

①~④< 생략 >

< 신 설 >

#### 제27조(기준가격의 산정 및 제시)

① 집합투자업자는 제26조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. 기준가격은 그 산정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(이하 "해당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 총액"이라 한다)을 그 산정일 전날의 해당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, 1,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.

#### 제26조(투자신탁재산 평가)

①~④<현행과 동일>

⑤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가 법령 및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.

#### 제27조(기준가격의 산정 및 제시)

① 집합투자업자는 제26조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. 기준가격은 **기준가격의 공고·게시일(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기준가격의 산정일로 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(법 제238조제1항에 따른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것을 말한다)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그 공고·게시일 전날의 집합투자증권 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며, 1,000좌 단위로 원 미만 셋째 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 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한다.**

**제29조(결산 서류의 작성 등)**

- ① <생략>
- ② 이 투자신탁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249조의8 규정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.

**제32조(상환금 등의 지급)**

- 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의 법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상황을 연기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

**제7장 수익자총회**

**제34조(수익자총회 및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)**

이 투자신탁은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249조의8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자총회 및 그와 관련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**제40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**

- ①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체 수익자의 수익증권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② <생략>

③ <생략>

**제29조(결산 서류의 작성 등)**

- ① <현행과 동일>
- ② 이 투자신탁은 **일반**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249조의8 규정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.

**제32조(상환금 등의 지급)**

- 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의 법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상황을 연기할 수 있으며, **이 경우에는 제25조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.**

**제7장 집합투자자총회**

**제34조(집합투자자총회)**

이 투자신탁은 **일반**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249조의8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집합투자자총회 및 그와 관련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**제40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**

- ① **다음 각 호의 사유로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한다.**

1. 집합투자업자, 신탁업자의 법령·신탁계약·핵심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

2. 집합투자업자, 신탁업자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

② <현행과 동일>

③ <현행과 동일>

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전체 수익자동의

<p>&lt; 신 설 &gt;</p> <p><b>제46조(손해배상책임)</b></p> <p>① 신탁업자는 관련법령·신탁계약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</p>	<p>를 얻은 후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. 이 경우 수익자는 집합투자재산에서 제35조와는 별도로 다음 호에 따른 투자신탁 보수를 지급해야한다.</p> <p>1. 변경된 신탁계약의 시행일 전일에 해당일의 순자산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6개월분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또는 신탁업자보수를 이 투자신탁에서 지급하기로 한다. 다만,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 변경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⑤ 집합투자업자, 신탁업자는 본 조 제4항 적용과는 별도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수익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</p> <p><b>제46조(손해배상책임)</b></p> <p>① <b>집합투자업자</b>와 신탁업자는 법령·신탁계약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</p>
<p><b>집합투자업자</b></p> <p>아라자산운용 주식회사</p> <p>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106길 23 중앙빌딩 1층</p> <p>대표이사 정충훈 (인)</p>	<p><b>집합투자업자</b></p> <p>아라자산운용주식회사</p> <p>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7길 11-9, 10층</p> <p>대표이사 <b>마 주 옥</b> (인)</p>